[사 건 명] 행심 2018 - 2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5. 11.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이 사건 경위

① 청구인이 2018년 3~4월경 피해학생에게 '김밥 먹을 때 아삭거리는 소리 나면 큰일이 잖아.','대학교 가서 화장실에서 김밥 먹을 때 오이랑 단무지 때문에 아삭거리는 소리 나면 밖에 다 들리니까 넌 김밥천국 아줌마하고 친해져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학생이 2018. 4. 13. '반 단체 대화방(◉◉◉ ◉◉◉)'에서 지구과학 시험범위를 물어보았고, 이에 ◇◇◇이 대화방에 '인간의 권리', '발언권'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수업시간에 잘 들었으면 알았을 텐데 자서 모르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시발'이라는 문자와 함께 게시하였다.

②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김밥 관련하여 조롱을 하였고, 단체대화방에 표시한 청구인의 표현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

인에 대하여 피해학생과의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0시간, 청구인 및 학부모에 대하여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1. 청구인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① 2018. 3~4월경 피해학생이 자신을 '아싸'라고 표현했고, 이에 청구인은 평소 SNS에서 '아싸'에 대하여 보았던 김밥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학생도 웃으면서 지나갔다.

②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제시한 내용은 언어표현의 방법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은 대학진학을 앞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①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의결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에 의거하여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단체대화방 대화문을 검토한 결과 대화문에는 신조어, 줄임말, 급식체 등 청소년들의 언어 및 비속어 등 평상시의 대화를 엿볼 수 있으며 학교폭력의 기준은 학생의 피해여부라고 볼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고 요소 중 하나로 작용되며,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조치를 내린다.

④ 피해학생은 1학년 시기부터 지속적인 장난 등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허탈감, 무력감, 또래관계 부적응 등의 우려와 두려움으로 등교를 꺼리고 있으며, 학교 이야기만 들어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대화내용이 명예훼손 · 모욕 또는 따돌림 · 사이버 따돌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나. 김밥 관련 내용

‘아싸’는 아웃사이더(outsider)의 줄임말로,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빗댄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흔히 대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강의를 듣고 식사하며 술을 마시는 등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청구인은 ‘아싸’와 관련하여 SNS에 게시된 내용 중 ‘김밥 이야기[1)]’를 보았고, 이전에 피해학생이 자신을 스스로 ‘아싸’라고 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학생에게 SNS에서 본 김밥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또한 피청구인도 SNS에서 ‘김밥 이야기’를 확인한

1) 혼자 식사를 하기 때문에 김밥에 단무지와 오이를 빼고 먹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싸’가 식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을 풍자하여 소개된 것이다.

점을 인정하고 있다(피청구인의 답변서 3쪽).

그런데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김밥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학생도 김밥천국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말한 취지는 '아싸'라고 자칭한 피해학생에게 김밥을 소리나지 않게 먹으려면 미리 단무지 등을 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따라서 김밥집 아줌마와 친하면 그것이 쉬울 것이라는 농담조로 한 말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김밥 이야기'를 하였다 하여, 피해학생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단체대화방의 내용

피해학생 : 지과 시험범위 아시는 분? (10:42)
◑◑◑ : 배운곳까지 일걸? 설마 안배운게 시험에 나오겠어? (10:51)
피해학생 : 단원으로 (10:53)
◍◍◍ : 아마 광합성까지일걸 (10:53)
피해학생 : 지과랫잖아 (10:54)
◍◍◍ : 어쩌라고. 나는 생명2듣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10:56)
피해학생 : 잘못된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 (10:57)
◍◍◍ :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해 (10:59)
사진(자고 있는 모습)
◍◍◍ : 지구과학실에서 자니까 범위를 모르는거지!(11:00)
피해학생 : 안말해줄거면 말하지마(11:06)
◇◇◇ : 인간의 권리,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공적인 권리, 발언권
◫◫◫ : 사진(체육복을 입은 학생이 서있는 모습) (11:07)
피해학생 : 꺼져다들 (11:07)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07)
피해학생 : 진짜 ▢같다 (11:07)
◇◇◇ : 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ㅋㅋ ▨▨이 침투력 무엇 (11:08)
◫◫◫ : 욕하는건 아닌거같은데 (11:08)
◍◍◍ : ■■ 나도 우리반의 일원인데 말을 할 권리가 있잖아 ... (11:13)
◑◑◑ : 하. 우리들의 3년 우정이 이렇게 깨지는 구나
■■는 왜 시험범위를 모르는 것일까 (11:20)

◇◇◇ : 아... 원통하다 (11:21)
◑◑◑ : 과연 지학쌤은 범위를 안알려주셨던 것일까? (11:22)
피해학생 : 비꼬지 말고 (11:23)
◑◑◑ : 설마 시~벌 수업시간에 자서 놓치진않았을테고.. (11:23)
피해학생 : 안알려줄거면 (11:23)
◇◇◇ : 시발 ■■ 좀 (11:23)
피해학생 : 뭐 (11:23)
◇◇◇ : 지학쌤한테 갠톡으로 물어보던가. 왜 여기서 난리야 (11:23)
◫◫◫ : 비분강개 (11:23)
◑◑◑ : ◇◇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욕은 좀 ...
◇◇◇ : ■■ 내가 욕한거 아니야. ◉◉이가 내껄로 장난친거야ㅜㅏ (11:25)
▨▨▨ : ◑◑◑과 ◇◇◇ 조용히 안해 (11:28)
◑◑◑ : 네 형 (11:28)
◑◑◑ : ■■ ㅈㅅ 아마 별의 물리량까지 일걸
메가스터디에서 잘 가르쳐주니까 참고행 (11:31)
◇◇◇ : 창문 조심하기 (11:33)
◑◑◑ : (사진) (11:33)
◀◀◀ : 머꼬 (11:34)
◀◀◀ : 어딨었누 (11:35)
피해학생 : ◑◑◑ 죽여버린다 (11:35)
◫◫◫ : 왜 그래 (11:36)
◑◑◑ : 하 슬슬 갈때가 된건가
■■ 잠만 가기전에 옵치 다이아만 찍고 (11:37)

단체대화방의 내용은 피해학생이 단체대화방에 지구과학 시험범위를 묻자, 같은 반 친구들이 피해학생에게 다른 과목에 대하여 말하거나, 피해학생이 지구과학 시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시험범위를 모르는 것이라고 하며, 지구과학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등 전반적으로 피해학생을 놀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단체대화방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놀리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를 곧바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은 위의 밑줄친 것으로, 피해학생이 지구과학 시험범위를 묻자, '배운 곳까지이고 배우지 않은 곳에서는 시험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가, 피해학생이 먼저 '꺼져 다들, 진짜 ▢같다'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므로, '피해학생이 왜 시험범위를 모

르는 것일까, 수업시간에 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답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장난이 심하다고 판단하였는지 곧바로 시험범위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또한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그것마저도 장난으로 '슬슬 갈 때가 된 건가, 잠깐만 옵치 다이아만 찍고[2]'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등,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모욕하거나 따돌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대화내용이 명예훼손 ·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장난삼아 놀리는 행위를 하였고, 단체대화방의 내용은 이러한 행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려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3]만으로는 청구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평소 장난삼아 조롱하거나 놀렸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추측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기에 볼 수 없다.

---

2)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를 빠르게 읽어서 '옵치'라고 하고, 게임에서 승급하여 최상등급인 '다이아'가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주어진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격한 증명의 절차를 거쳐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 또는 가능성, 추측만으로 함부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청구인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거나 자퇴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중대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하지만 위 진술서의 내용은 청구인 등이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 또는 정당화한 것이거나, 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의 진술서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